

No. 43182

**Republic of Korea
and
Algeria**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Algeria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Algiers, 12 October 1999

Entry into force: *30 September 2001 by notific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

Authentic texts: *Arabic, English and Korean*

Registration with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Republic of Korea, 15 November 2006*

**République de Corée
et
Algérie**

Accord entre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de Corée et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Algérie pour la promotion et à la protection des investissements. Alger, 12 octobre 1999

Entrée en vigueur : *30 septembre 2001 par notification, conformément à l'article 11*

Textes authentiques : *arabe, anglais et coréen*

Enregistrement auprès du Secrétariat des Nations Unies : *République de Corée, 15 novembre 2006*

[KOREAN TEXT – TEXTE CORÉEN]

대한민국 정부와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양국간의 호혜를 위하여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일방국가의 투자자가 타방국가의 영역안에서 행하는 투자에 대하여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며,

이 협정에 기초한 투자의 증진 및 보호가 양국에서 기업의 선도적 역할을 촉진함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정 의

이 협정의 목적상,

1. “투자”라 함은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하며,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가. 동산 및 부동산과 저당권·유치권·리스·질권과 같은 기타 재산권
 - 나. 회사나 기업의 지분·주식·회사채 및 기타 다른 형태의 참여
 - 다. 금전청구권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행청구권
 - 라. 저작권·상표권·특허권·산업설계·기술공정·노하우·영업비밀·상호권 및 영업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 마. 투자와 관련된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와 법률에 의한 면허 및 허가로서 천연자원의 탐사·추출·개간 또는 개발을 위한 권리를 포함한다.

자산이 투자되거나 재투자되어 그 형태에 어떠한 변경이 있더라도 이는 동 자산의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투자자”라 함은 타방채약당사자의 영역안에 투자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자연인”이라 함은 어느 일방채약당사자에 대하여 자국의 법률에 의하여 그 채약당사자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을 말한다.
나. “법인”이라 함은 어느 일방채약당사자에 대하여 공공기관·기업·회사 및 조합과 같이 자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구성된 그리고 법인으로 인정된 실체를 말한다.
3.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발생한 금액을 말하며, 특히 이윤·이자·자본이득·배당금·사용료 및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4. “영역”이라 함은 채약당사자의 영토와 국제법에 의하여 그 채약당사자가 천연자원의 탐사·개발 및 보존을 위하여 관할권 또는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한계선에 인접한 해양수역을 말한다.
5. “자유태환성통화”라 함은 미국 달러·독일 마르크·프랑스 프랑·영국 파운드·일본 엔 또는 국제거래지급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주요 국제외환시장에서 광범위하게 교환되는 통화를 말한다.

제 2 조

투자의 증진과 보호

1. 각 채약당사자는 타방채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안에서 투자를 하는데 유리한 여건을 장려하고 조성하며,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그러한 투자를 허용한다.

2. 각 계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계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언제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부여받으며 타방계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

3. 어느 일방계약당사자도 불합리하거나 또는 차별적인 조치에 의하여 자국의 영역안에서 타방계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의 운용·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조

투자에 대한 대우

1. 각 계약당사자는 그 영역안에서 타방계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하며, 자국의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각 계약당사자는 그 영역안에서 타방계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투자의 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공평하며,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계약당사자가 다음 사항으로 인하여 부여되는 대우·특혜 또는 특권의 혜택을 타방계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계약당사자가 당사국이거나 당사국이 될 현재 또는 미래의 관세동맹·자유무역지대·공동역외관세지대·통화동맹 또는 유사한 국제협정이나 여타 형태의 지역협력체

나.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와 관련된 현재 또는 미래의 협약 또는 기타 국제약정

수용 및 보상

1.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공공의 목적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비차별적 기초에 입각하지 아니하거나 신속·충분·유효한 보상이 없으면 국유화, 수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당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보상은 수용조치가 취하여지거나 또는 공공연하게 알려지기 직전중 보다 이른 시기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수용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적용가능한 상업이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부당한 지체없이 지급되고 효과적으로 실현되며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

2. 자신의 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사법당국 또는 여타의 독립된 당국에 대하여 이 조 제1항에 설정된 원칙에 따라 당해 사례와 당해 투자가치의 산정에 대한 신속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일방체약당사자가 그 법령에 의하여 조직 또는 설립된 회사로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다른 형태로 참여한 회사의 자산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4.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전쟁·무력충돌·국가비상사태·항거·반란·폭동 또는 기타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그 타방체약당사자는 원상회복·배상·보상 또는 기타의 해결에 있어서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그 투자에 대하여 부여한다.